

보도시점

2024. 8. 16.(금) 조간
2024. 8. 15.(목) 12:00

배포

2024. 8. 14.(수)

어린이집·학교 주변에서는 금연

-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·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8월 17일(토)부터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,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.

그동안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(2023.8.16.)을 통해 어린이집·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(시설 경계 10m→30m 이내)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(시설 경계 30m 이내)이 결정된 바 있으며,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(토)부터 본격 시행된다.

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,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.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, 각 시·군·구청에서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, 벽면, 보도 등에 설치·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·표지·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,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·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.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(금연두드림)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*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(www.khepi.or.kr) >> 자료실 >> 홍보자료
금연두드림 누리집(nosmk.khepi.or.kr/nsk/ntcc/index.do) >> 자료실 >> 홍보

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“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,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”라면서,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

담당 부서	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	책임자	과 장	정혜은 (044-202-28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의 (044-202-2822)



☐ 포스터

□ 표지·스티커



□ 현수막

